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66
----------	-----

제출년월일: 2026. 3. 10.

제출자: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마.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6. 02. 02. ~ 2026. 02. 22. (20일)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 규제 of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3.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
4.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본문 제19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스마트도시과 AI빅데이터팀 홍성민(2155-6089)

< 의안 소관 부서명 >

스마트도시과	
연 락 처	(02) 2155-6089